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제이알아파트 제105동 제404호						
토지	지목	대	면적	8596.1 ㎡	대지권종류	소유권	대지권비율	8596.1분의22.0046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아파트	면적		59.866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삼억사천구백만원정	(₩349,000,000)
계약금	금 오천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김홍산 (인)
현임대보증금	금 이억육천만원정	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다.
잔금	금 이억구천구백만원정	은 2018년 03월 29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년 03월 29일 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함.
2.계약금중 금삼백만원정은 2017년 12월 04일 매도인 김홍산 국민은행(117901-04-094458)계좌로 이체완료 했고 금사천칠백만원정은 계약서 작성일 동 매도인 계좌로 입금함.
3.현 전세입자 (보증금이억육천만원정)는 2018년 4월 14일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한다
4.매도인 사정상 대리인 계약이며 대리용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며 작성 함
5.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 날인한다. 2017년 12월 11일

매도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63번길 142, 201동 701호 (민락동,센텀비스타동원2차)					(인)
	주민등록번호	801019-1117729	전화	010-5019-1008	성명	김 홍산 김홍산	
대리인	주소	부산광영시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2동 2106호(연산동, 에스케이뷰)					(인)
	주민등록번호	570624-2480418	전화	010-4841-5105	성명	홍 정의 홍정의	
매수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77, 201동 1304호 (홍은동,현대아파트)					(인)
	주민등록번호	810114-1796411	전화	010-6226-5234	성명	나 형동 나형동	
개중업개공사인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96					
	사무소 명칭	녹번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명	서명및날인 홍	(인)
	전화번호	02-357-7555	등록번호	11380201600251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인)
공동인개중업개사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7 현대홈타운상가111호1층					
	사무소 명칭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명	서명및날인 김	(인)
	전화번호	02-382-5900	등록번호	제11380-2016-00055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인)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 임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설명 자료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그 밖의 자료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근거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9~12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등기권리증 미제출)

유 의 사 항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제이알아파트 제105동 제404호			
		면 적(㎡)	8596.1㎡	지 목	공부상지목	대
					실제이용 상태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물	전용면적(㎡)	59.866㎡		대지지분(㎡)	8596.1분의22.0046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2002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아파트
					실제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방 향		남동향 (기준: 거실창문)
		내진설계 적용여부	건물대장표시없음	내진능력		건축물대장표시없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성명:김 홍산/생년월일:1980-10-19/주소: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63번길 142, 201동 701호 (민락동,센텀비스타동원2차)	토 지	해당 없음
		건축물	성명:김 홍산/생년월일:1980-10-19/주소: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63번길 142, 201동 701호 (민락동,센텀비스타동원2차)	건축물	해당 없음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지역·지구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상한	용적률상한
		용도지구	해당 없음	30.16 %	342.68 %
		용도구역	해당 없음		
	도시·군계획 시설	해당 없음	허가·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 기 지 역 여 부	[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	해당 없음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해당 없음

④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35m × 8m)도로에 접함	[√] 포장 [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 불편함
	대중교통	버 스	(대림,진로아파트)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 차량)	약 5분
		지하철	(녹번전철)역,	소요시간: ([√] 도보, [ ] 차량)	약 5분
	주차장	[ ] 없음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 기타 ( )			
	교육시설	초등학교	(은평초등) 학교,	소요시간: ([√] 도보, [ ] 차량)	약 5분
		중 학 교	(영락중) 학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20분
		고등학교	(동명고등) 학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20분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N-C백화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20분
		종합의료시설	(서부병원),	소요시간: ([ ] 도보, [√] 차량)	약 20분

⑤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 자체관리 [ ] 그밖의유형

⑥ 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 있음 (종류 및 위치:)					
⑦ 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349,000,000				
	개별공시지가(㎡당)	2.657.000	건물(주택)공시가격	199.000.000		
⑧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0.1 %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II.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현 전세입자 전세보증금(금이억육천만원정)있슴.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 도	파손여부	[√] 없음 [ ] 있음 (위치:)		
		용 수 량	[√] 정상 [ ] 부족함 (위치:)		
	전 기	공급상태	[√] 정상 [ ] 교체필요(교체할 부분:)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 그 밖의 방식 ( )		
	소 방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 ] 있음(해당없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난방공급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시설작동	[√] 정상 [ ]수선필요( )
		종 류	[√] 도시가스 [ ] 기름 [ ] 프로판가스 [ ] 연탄 [ ] 그밖의종류(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 없음			
	배 수	[√] 정상 [ ] 수선필요 ( )			
	그 밖의 시설물	해당 없음			
⑪ 벽면 및 도배상태	벽 면	균열	[√] 없음 [ ] 있음 (위치:)		
		누수	[√] 없음 [ ] 있음 (위치:)		
	도 배	[ ] 깨끗함 [√] 보통임 [ ] 도배필요			
⑫ 환경조건	일 조 량	[ ] 풍부함 [√] 보통임 [ ] 불충분(이유:)			
	소 음	[ ] 미미함 [√] 보통임 [ ] 심한편임	진 동	[ ] 미미함 [√] 보통임 [ ] 심한편임	

III.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1,396,000 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 (349,000,000원) × 0.40%
	실 비	0 원	실비 :
	계	1,535,600 원 (부가세(139,600) 포함)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매도인 (임대인)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63번길 142, 201동 701호 (민락동,센텀비스타동원2차)	성 명	김 홍산 김홍산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1980-10-19	전화번호	010-5019-1008	
매수인 (임차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77, 201동 1304호 (홍은동,현대아파트)	성 명	나 형동 나형동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1981-01-14	전화번호	010-6226-5234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11380201600251	성 명 (대표자)	홍성록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녹번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96	전화번호	02-357-7555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제11380-2016-00055호	성 명 (대표자)	김 선 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7 현대홈타운상가111호1층	전화번호	02-382-590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0.>

문서확인번호 1512-9796-8319-523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2쪽 중 제1쪽)

고유번호	1138010200-3-02800001	민원24접수번호	20171211 - 39186878	명칭	(105동)	호명칭	404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지번	28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전 유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	59.866	김홍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74, 208동 1606호(안락동, 안락뜨란채2단지아파트)	1/1	2015.12.22
		- 이하여백 -			801019-1******			소유권이전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복도,계단실	17.538
부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노인정	0.204
부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비실	0.094
부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대피소	6.283

소 유 자 현 황

- 이하여백 -

※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2017년 12월 11일

담 당 자: 지적과

전 화: 02 - 351 - 6796

은평구청장인

은평구청장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X210㎜[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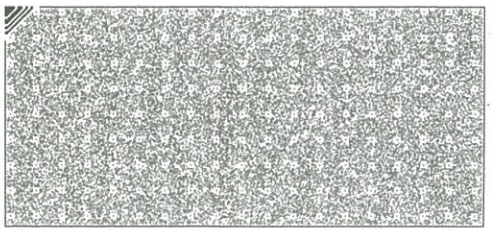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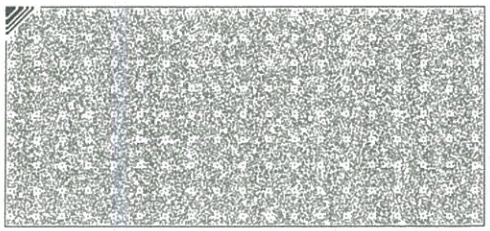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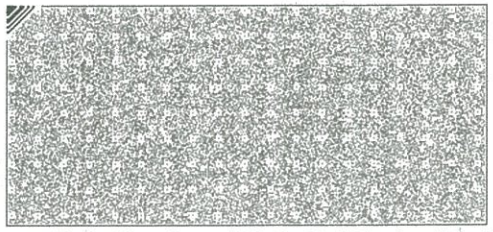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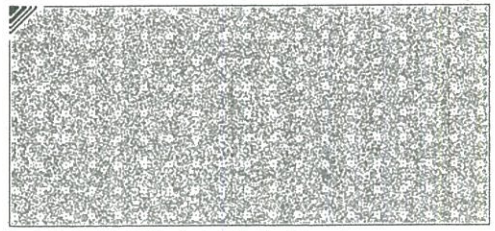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1512-9796-8319-5231

고유번호	1138010200-3-02800001	민원24접수번호	20171211 - 39186878	명칭	(105동)	호명칭	404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지번	28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공 용 부 분					공동주택(아파트) 가 격 (단위 : 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기 준 일	공동주택(아파트)가격
부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5.83	2017.01.01	199,000,000
부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민공동시설	0.496	2016.01.01	179,000,000
부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0.046	2015.01.01	169,000,000
부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관리사무소	0.204	2014.01.01	165,000,000
부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주차장	11.692	2013.01.01	158,000,000
부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전기실	0.646	2012.01.01	165,000,000
		- 이하여백 -			2011.01.01	166,000,000
					2010.01.01	166,000,000
					2009.01.01	166,000,000
					2008.01.01	148,000,00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만 표시됩니다.	

변동사항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02.10.16	2002.9.30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신축) - 이하여백 -			

297mmX210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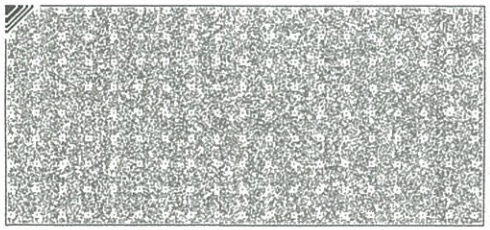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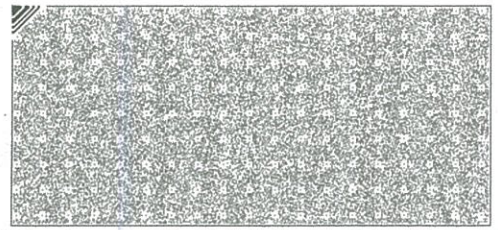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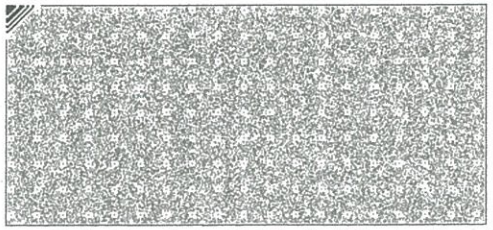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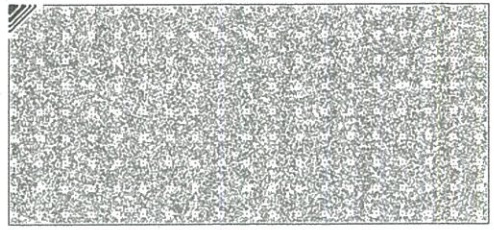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집합건물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제이알아파트 제105동 제4층 제404호

고유번호 1147-2002-011670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11월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제이알아파트 제105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 ~~1층 311.178㎡~~ ~~2층 311.178㎡~~ ~~3층 311.178㎡~~ ~~4층 311.178㎡~~ ~~5층 311.178㎡~~ ~~6층 311.178㎡~~ ~~7층 311.178㎡~~ ~~8층 311.178㎡~~ ~~9층 311.178㎡~~ ~~10층 311.178㎡~~ ~~11층 311.178㎡~~ ~~12층 311.178㎡~~ ~~13층 311.178㎡~~ ~~14층 311.178㎡~~ ~~15층 311.178㎡~~ ~~16층 311.178㎡~~ ~~17층 311.178㎡~~ ~~18층 311.178㎡~~ ~~19층 173.596㎡~~ ~~옥탑1층 26.514㎡(연면적제외)~~ ~~옥탑2층 26.514㎡(연면적제외)~~	~~도면편철장 제5책 제1447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도로명주소

열람일시 : 2017년12월11일 16시57분20초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80-1 녹번제이알아파트 제105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아파트 1층 311.178㎡ 2층 311.178㎡ 3층 311.178㎡ 4층 311.178㎡ 5층 311.178㎡ 6층 311.178㎡ 7층 311.178㎡ 8층 311.178㎡ 9층 311.178㎡ 10층 311.178㎡ 11층 311.178㎡ 12층 311.178㎡ 13층 311.178㎡ 14층 311.178㎡ 15층 311.178㎡ 16층 311.178㎡ 17층 311.178㎡ 18층 311.178㎡ 19층 173.596㎡ 옥탑1층 26.514㎡(연면적제외) 옥탑2층 26.514㎡(연면적제외)	2013년3월29일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대	8596.1㎡	2002년11월8일

열람용

열람일시 : 2017년12월11일 16시57분20초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11월8일	제4층 제404호	철근콘크리트조 59.866㎡	도면편철장 제5책 제1447장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8596.1분의 22.0046	2002년9월30일 대지권 2002년11월8일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	2015년12월22일 제99494호	2015년10월28일 매매	소유자 김홍산 8010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74, 208동 1606호(안락동, 안락뜨란채2단지아파트) 거래가액 금275,000,000원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열람일시 : 2017년12월11일 16시57분20초

열 람 용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7년12월11일 16시57분20초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음성변환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0000 - 4970 - 1
신청인: 김홍산(생년월일:1980.10.19),	담당자: 최민석 (전화: (051)61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8 0 1 0 1 9 - 1 1 1 7 7 2 9	본 인	대리인
		○	

성 명 (한 자)	김홍산 (金洪山)	인 감	
국 적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63번길 142,201동 701호 (민락동,센텀비스타동원2차)		

용도					
매도용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명)	빈 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 소재지)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일반용					
비 고					

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O표시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제출용', 'OO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을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수입인지 0117 수영구 600원 2017.12.4 26500026 중지 발행시각: 16:12:00.613

일련번호	No. 4970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20126006651015070100 11-450829400070004000410]주소지 증명청 : 민락동(29/1)

210㎜ ×297㎜(특수용지 80g/㎡)

위 임 장

부동산의 표시	위임 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JR아파트 105동 404호	매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

위임자 (소유자)		수임자 (대리인)	
성 명	김 흥 산 (인)	성 명	홍 정 의 (인)
주민번호	501019-1117729	주민번호	570624-2480418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63번길 142, 신탕비스타동원2이동 7이호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 15, 102동 2106호 (연산동, 아스카아파트)

부동산 소유자 김 흥 산 은(는) 홍 정 의 에게

상기 표시한 위임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7 년 12 월 11 일

* 첨부서류

1. 위임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 부.

주소변경	확인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74, 208동 1606호 (안락동,안락뜨란채2단지아파트)('14.1.10.안락제2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2동 2106호 (연산동,연산동베스코이뷰)('16.11.2 연산제4동)	

※ 이 증은 운전면허 소지자 본인 확인용으로 항상 휴대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증

김홍산(金洪山)

801019-[redacted]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42 안락뜨란채2단지아파트
207동104호

2009. 9.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2동 2106호 (연산동,연산동베스코이뷰)('12.4.26. -연산제4동)	11647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괴태료(3만원)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처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괴태료(2만원)가 부과됩니다.
-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 http://www.koroad.or.kr ☎ 1577-1120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12-91-617694-21

홍정의 [redacted]
570624-[redacted]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74,
208동 1606호
(안락동, 안락뜨란채2단지@)
적성검사 2024.01.01.
기 간 : ~ 2024.12.31.

GDNFE9

2014.09.04. 부산지방경찰청장

借 用 證

■ **차 용 인** : 나 형 동(810114-1796411)

■ **대 여 인** : 김 선 자(640523-2011012)

■ **차용금액 : 일천만원(금10,000,000원)**

■ **물 건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80-1 녹번진로아파트 105동404호**

1. 상기 물건의 매매계약 진행시 매매 계약금 용도로 일천만원 (금10,000,000원)을 차용 함.
2. 2018년4월14일 계약 잔금 일에 차용금액 일천만원 (금1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함.
3. 본 차용금은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8년 4월14일 까지 상환하기로 함.

2017년12월11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77 홍은현대아파트 201동 1304호

성 명 : 나 형 동(인) 나형동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김 선 자 귀하

공 제 증 서

공제번호	01-21-1702-60130		
성 명	김선자	생년월일	1964년 05월 23일
사무소명칭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7, 1층 111호(불광동, 현대홈타운)		
공제금액	일억원(₩100,000,000)		
공제기간	2017년 03월 08일 부터 2018년 03월 07일 까지		

우리 협회는 뒷면에 기재된 공제약관(www.kar.or.kr 공제안내에서 확인 가능)및 이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으로 이 증서를 발행합니다.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의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약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피해자의 수 또는 중개사고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발생시 당 협회에 손해사실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에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시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니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시 필히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공제안내에서 확인 가능) 및 공제증서 뒷면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증서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사본이므로 취급자(인)이 생략 되었으며 증서효력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제 1 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공제료를 수납하고 발행한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협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①협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가입자가 협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온라인 청약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제 3 조(공제료의 납부시기)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공제책임의 기간) 협회의 공제책임은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 0시부터 공제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됩니다.
제 5 조(공제계약의 철회 및 거절)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공제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② 협회는 공제규정 제8조 제3항 각호의 경우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보상하는 손해) 협회 공제의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천재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법 제14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
3.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등을 거래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분양권 등)
4.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의무사항 이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특약에 의한 손해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제 8 조(공제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및 범위) ①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③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해당증서의 공제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④공제계약 실효기간에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공제가입 청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는 협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공제가입자가 기가입한 공제기간 중에 중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협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계약을 맺은 후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3. 제1항의 위반사실이 협회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③ 공제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협회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공제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공제가입자는 공제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고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다른 업무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
2. 공제계약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제 11 조(공제책임의 지역적 범위) 협회는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공제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공제계약의 실효) ① 공제계약의 실효는 공제계약 해지와 공제계약 소멸이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계약의 해지
가. 임의해지 : 가입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회의 책임이 실효 또는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제규정 제8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협회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해지한 때
2. 공제계약의 소멸
가.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
나. 공제가입자가 폐업, 등록취소 또는 사망한 때
다. 공제가입자가 휴업 및 업무정지기간인 때
라.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의 전액인 때
마. 공제가입자가 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 기간인 때
제 13 조(공제계약의 무효)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공제가입자의 고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기 가입한 공제기간 중에 중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협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약한 경우
제 14 조(공제료의 환급) ①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 등으로 실효된 때에는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공제가입금에 대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
2. 해지·소멸의 환급은 공제료에서 공제계약을 위해 협회가 지출한 필요 제 경비를 차감한 잔여 공제료에서 해당 공제계약기간 중 미경과 공제계약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이 실효된 후 60일내에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협회가 지출한 필요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된 때에는 공제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공제사고의 통지 의무) ① 공제가입자 또는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으로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는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일, 장소, 상황 및 손해정도
2. 거래당사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3.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또는 제기한 때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협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손해방지 의무) ①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
2.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일
3.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② 협회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구상하거나, 손해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협회의 개입 및 대행) ① 협회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등 사고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고해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합니다.
제 18 조(공제사고의 조사) ① 협회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및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협회에 공제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0 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보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의 합계액이 손해액 보다 많은 때에는 협회는 각각 산출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소멸시효)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공제료의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복지상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2 조(구상 및 대위) ①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피공제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협회가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가입자가 법인(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분사무소 책임자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 24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공 제 증 서

공제번호	01-21-1612-60369		
성 명	홍성록	생년월일	1959년 06월 01일
사무소명칭	녹번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596(녹번동)		
공제금액	일억원(₩100,000,000)		
공제기간	2016년 12월 29일 부터 2017년 12월 28일 까지		

우리 협회는 뒷면에 기재된 공제약관(www.kar.or.kr 공제안내에서 확인 가능)및 이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으로 이 증서를 발행합니다.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약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발생시 당 협회에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에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시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니 중개의뢰인은 중개계약시 필히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공제안내에서 확인 가능) 및 공제증서 뒷면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증서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사본이므로 취급자(인)이 생략 되었으며 증서효력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원목무늬 바닥재(LG글로텍)로 거실의 품위를 한껏 살렸습니다.

우물천정

거실 천정 중앙을 우물천정으로 시공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시스템 사각등,
산테리아를 설치하였습니다.

거실가구

수납기능을 최대한 살린 고품위 원목질감의 거실장이 실내분위기를 한껏 살려 줍니다.

창고, 보일러실 칸막이

원목질감의 고급 칸막이 설치로 품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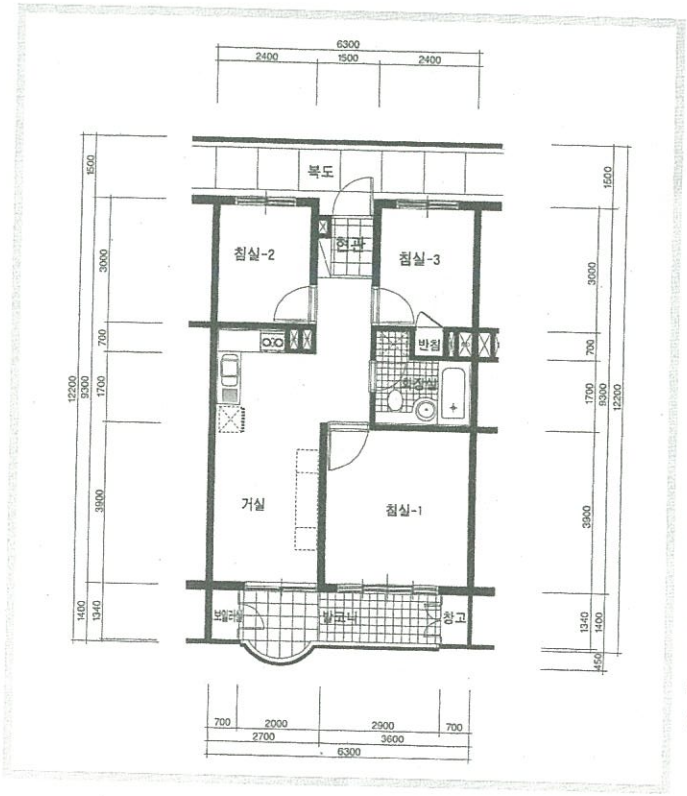

- 전용면적 : 59.866㎡ (18.109평)
- 공용면적 : 23.793㎡ (7.197평)
- 공급면적 : 83.659㎡ (25.306평)
- 기타공유 : 1.690㎡ (0.511평)
- 주 차 장 : 17.522㎡(5.300평)
- 계약면적 : 102.871㎡(31.118평)
- 서비스면적 : 7.389㎡(2.235평)

❶	거 실	9.72㎡(2.94평)
❷	침실 1	14.04(4.247평)
❸	침실 2	7.2㎡(2.178평)
❹	침실 3	7.2㎡(2.178평)
❺	주방 및 식당	11.97㎡(3.62평)
❻	욕 실	5.2㎡(1.573평)
❼	현 관	2.1㎡(0.635평)
❽	반 침	0.56㎡(0.169평)
❾	창 고	0.938㎡(0.283평)
❿	보 일 러 실	0.938㎡(0.283평)